#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60

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 조은희 · 이만희 · 박정하

백종헌 · 김용태 · 신성범

김종양ㆍ이성권ㆍ신동욱

박성훈 • 한기호 • 강선영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.

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「민사집행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있는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빈발하고 있음.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임.

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,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함(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국민건강보험공단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등의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 	개 정 안
제4조(금융거래의 비밀보장) ①	제4조(금융거래의 비밀보장) ①
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	
명의인(신탁의 경우에는 위탁	
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)의	
서면성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	
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	
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(이	
하 "거래정보등"이라 한다)를	
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	
서는 아니 되며, 누구든지 금융	
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	
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	
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	
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	
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	
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	
하다.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2의2. 국민건강보험공단이 「국
	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
	료등의 체납자의 재산조회를

	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	
	등의 제공	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	